

수원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1나10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한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6. 24.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2. 23. 선고 2020가합1044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임야 108,49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0. 1. 3. 접수 제2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갑 제3 내지 5호증은 원고와 피고가 2019. 10. 1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전인 2019년 9월에 작성된 문서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0. 1. 15. 피고에게 2020. 1. 31.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거나, 2020. 2. 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20. 3.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카소11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할 당시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분을 수령한 날에는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위 제소명령신청 이전 또는 소장부분 수령 이전에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홍동기, 판사 조효정, 판사 이영미